

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
2021년도 투명성 보고서

2022. 1. 24

(주)프렌즈큐브

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제64조의5(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)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2022년 1월 24일

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관한 2021년도 투명성보고서

1. 일반현황 (‘21년 12월말 기준)

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	(주)프렌즈큐브
대표자	김영민
정보통신 주요서비스 / 3개월 일일평균이용자	소모임 - No.1 취미모임 앱 / 약 11만명
정보통신서비스부분 연평균 매출액	약 19억원
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	김영민

2.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

1)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

○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(2021. 1월)

- (신고·삭제요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) 불법촬영물등 관련 사진·동영상과 함께 신고사유, URL 등을 기재하여
고객센터 또는 이메일로 신고접수 할 경우 담당자 접수 및 신속하게 처리
- (제목·명칭 식별 및 검색제한에 관한 사항) 데이터베이스에 불법촬영물등 관련 검색어를 설정하여 검색제한하고,
업데이트 하는 등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운영
- (영상물의 식별 및 게재제한에 관한 사항) 동영상 게시물 등록이 불가하며, 스틸 이미지 등록시 모니터링 실시
- (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이용자 고지에 관한 사항)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
불법촬영물등 유통에 대한 처벌조항과 사이트 규정을 공지/팝업을 통하여 고지하고 있음
- (그 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)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운영·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,
건전한 커뮤니티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실시

**2021년도
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**

2021. 1. 24

(주)프렌즈큐브

2) 불법촬영물등 신고기능 마련

○ 신고기능 마련

-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관계 법령(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)이 시행된 2020년 12월10일부터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.

SKT 9:06    97%

← 신고하기

작성자 이민영
내용 사진

불건전한 내용 >
스팸 및 부적절한 홍보 >
명예훼손 및 비방 >
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>
개인정보 도용 >
기타 (직접입력) >

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상세 사유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등이 필요합니다. 관련 신고는 아래 링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.
[불법촬영물등 신고 접수하기](#)

III ○ <

SKT 9:07    97%

← 불법촬영물 신고하기 완료

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제1항 및 시행령 제30조의 5 제2항에 의거하여, [아래 링크에서 '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·삭제요청서'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](#)

[불법촬영물등 유형과 정의 바로가기](#)

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·삭제요청서 다운받기
[한글파일](#) [워드파일](#)

***유의 사항**
신고·삭제요청(서) 각각의 항목 중 기재되지 않은 항목이 있거나, 대상이 된 불법촬영물등이 특정되지 않아 검토가 어려운 경우,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고 신고·삭제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.

***참고 사항**
- 음란유해물이나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신고는 소모임 신고기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- 불법촬영물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, 그에 해당하지 않는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신고는 관련법에 의거한 불법촬영물등 신고로 접수될 수 없습니다.

이메일
[input field]

신고·요청자 이름
[input field]

생년월일
[input field]

휴대전화번호
[input field]

III ○ <

SKT 9:07    97%

← 불법촬영물 신고하기 완료

신고 구분 선택 (중복선택가능)
 불법촬영물등 유통신고 불법촬영물등 삭제요청

신고·요청 사유 (중복선택가능)
 불법촬영물 ① 불법촬영물 ②
 허위 영상물 ① 허위 영상물 ②
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

불법촬영물 ①
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

불법촬영물 ②
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(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)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

허위 영상물 ①
유통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·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 또는 가공한 것

허위 영상물 ②
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

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
아동·청소년 또는 아동·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

III ○ <

SKT 9:07    97%

← 불법촬영물 신고하기 완료

촬영해주시기 바랍니다. (최대 1,000자 입력가능)

[input field]

파일 첨부
[input field] [input field] [input field]

***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신고·삭제요청서의 정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·제공될 수 있습니다.**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
- 항목 : 이메일, 이름, 휴대전화번호, 첨부파일, [선택]생년월일
- 수집, 이용목적 : 신고인 확인,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 및 처리
- 보유기간 : 3년
-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거부 시 요청 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.

동의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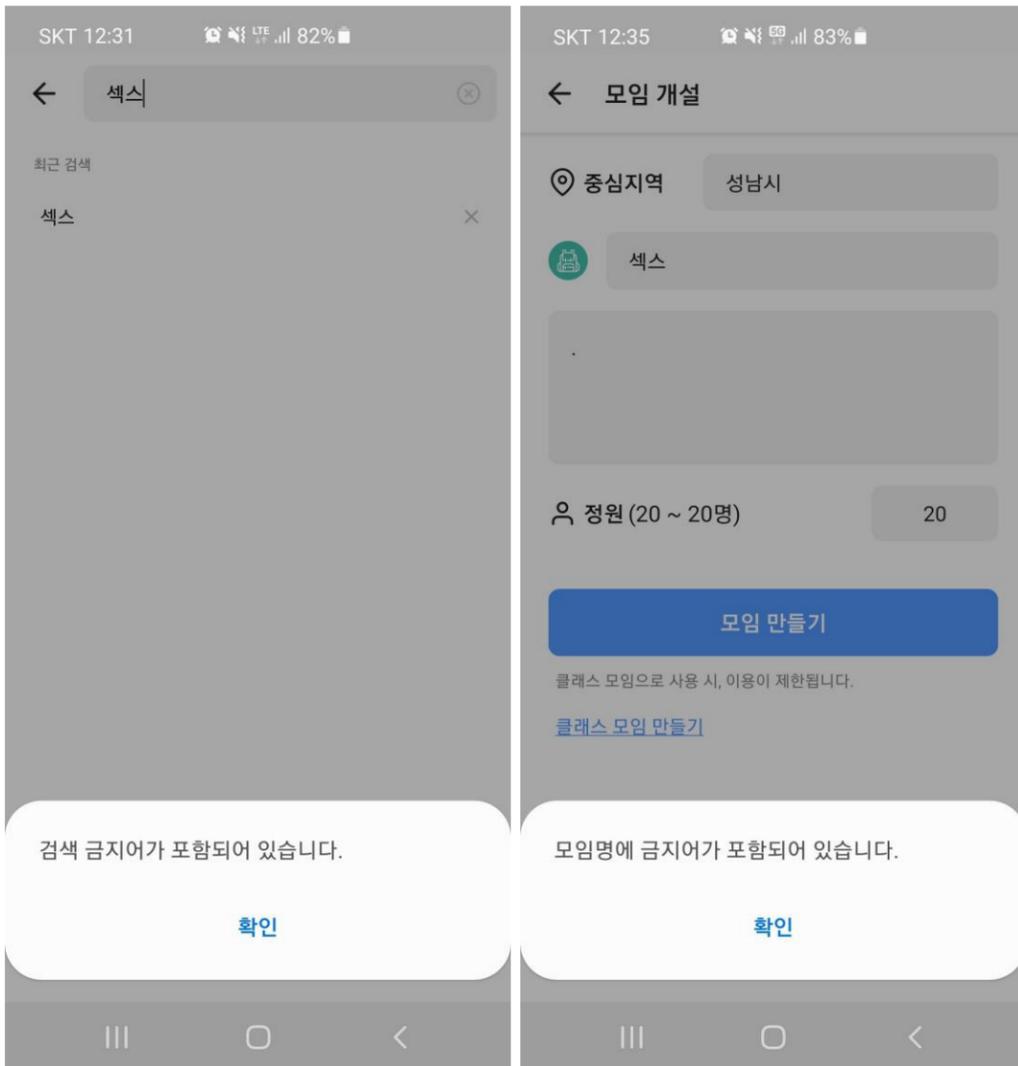
불법촬영물등 신고·삭제요청 확인
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·삭제요청을 합니다.

III ○ <

3) 불법촬영물등 검색 제한 조치

○ 불법촬영물등 검색결과 송출 제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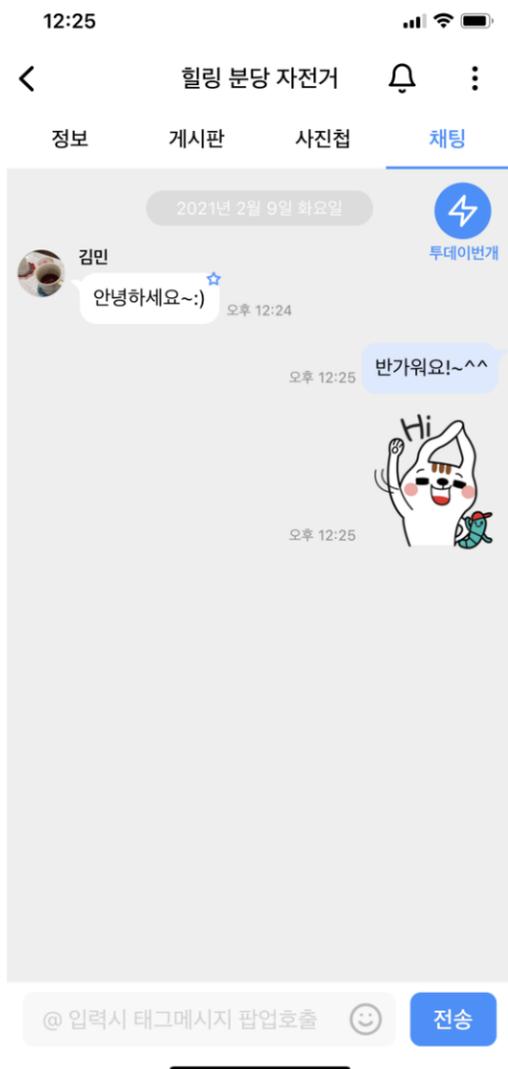
-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검색결과 송출 제한 기능 적용



4)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

○ 사진 이미지 모니터링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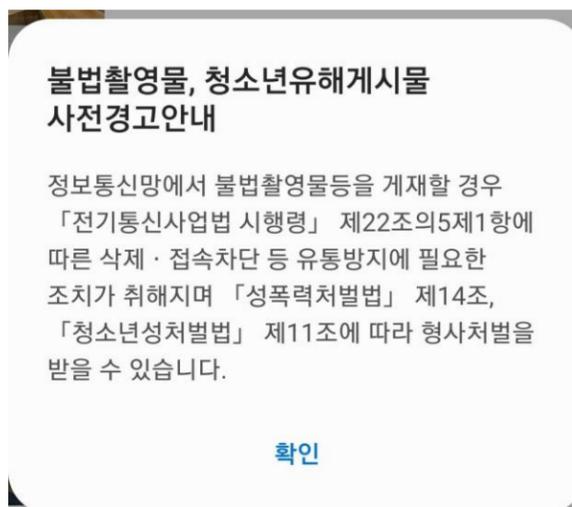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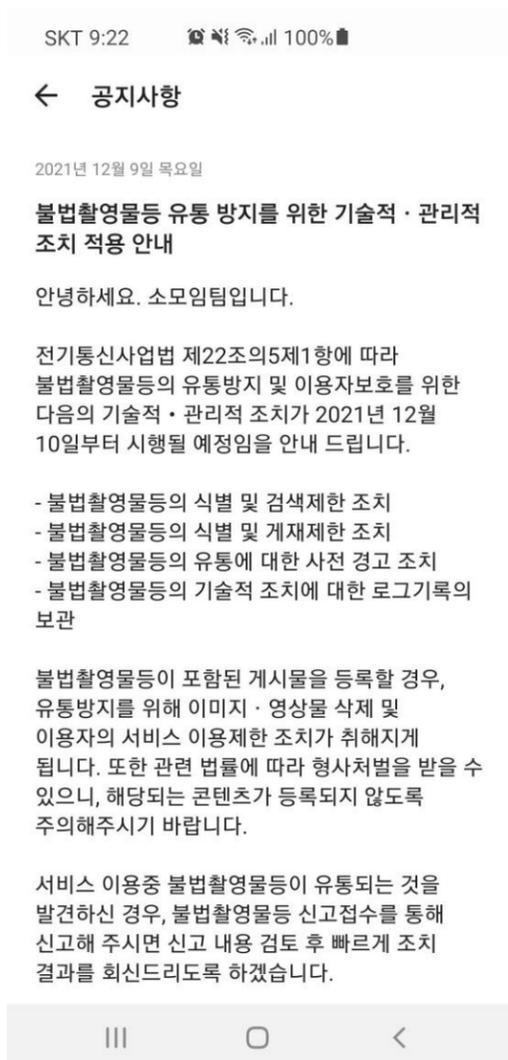
- 사진 등록시 불법촬영물 및 유해게시물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
- 현재 게시판 및 사진첩은 동영상 게시물 등록이 불가하며, 채팅방은 텍스트 및 이모티콘만 사용 가능



5)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

○ 사전경고 조치 시행

- 공지사항 및 게시물 업로드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



○ 로그기록 보관

-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·추정되는 영상물을 시스템에 기록하고 있으며, 로그기록이 위·변조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3년간 유지·관리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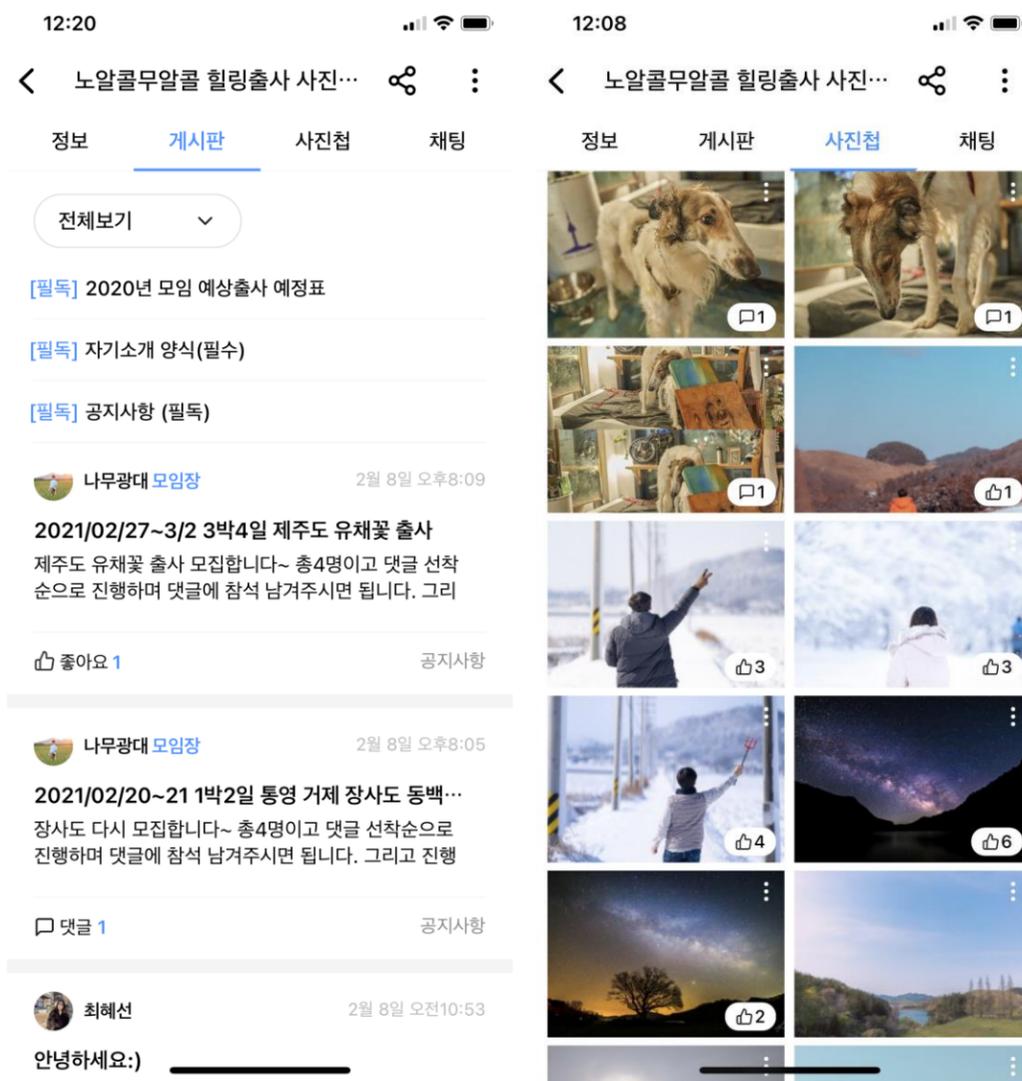
<로그종류>

- ① 신고·삭제요청 처리에 포함하는 로그 기록 : 신고일자·유형 처리결과 등
- ② 검색기반 필터링에 포함하는 로그 기록 : 설정 단어 유형·등록일자·삭제일자·검색제한 필터링 작동여부 등

6) 기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

○ 불법촬영물 및 음란물이 공유되지 않도록 건전하고 투명한 커뮤니티 문화 형성

- 모임 회원뿐 아니라 모임에 가입돼있지 않은 비회원에게도 게시물이 투명하게 공개



3.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

○ 2021년 불법촬영물 신고접수 및 처리건수 :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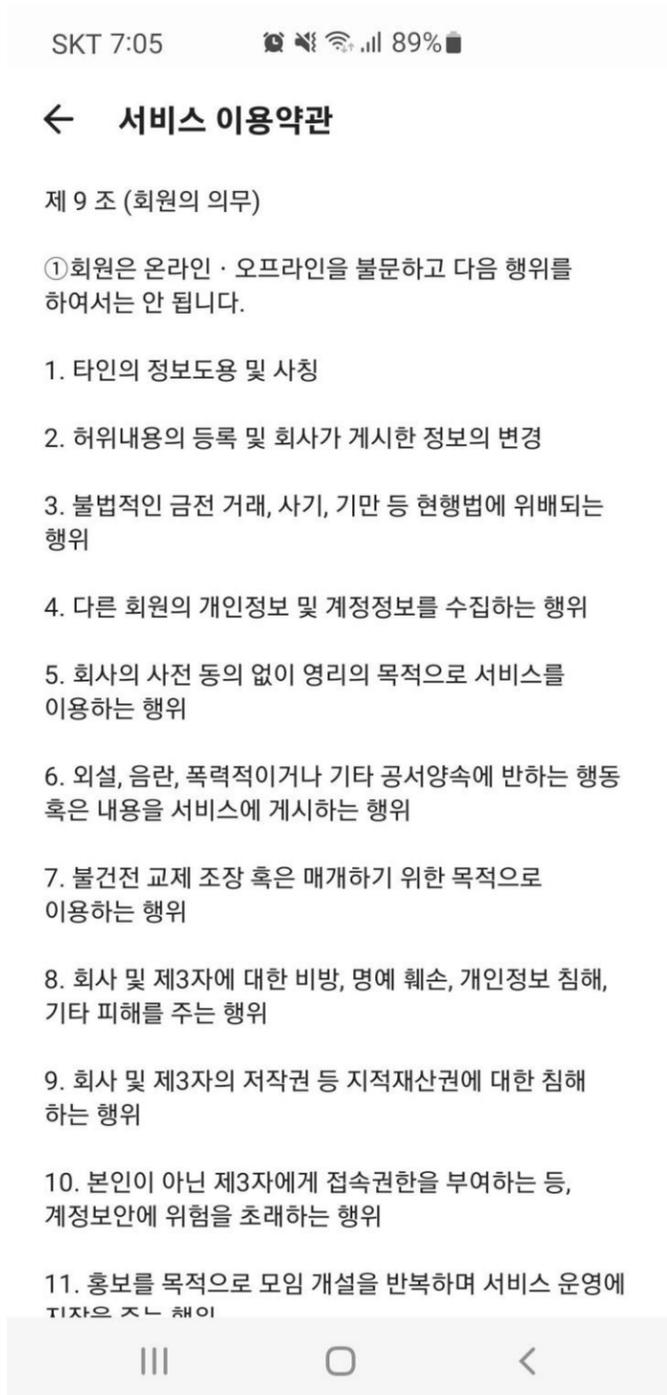
구 분		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계
신고 접수	신고·삭제 요청인	피해자등													
		기관·단체													
		소계	0	0	0	0	0	0	0	0	0	0	0	0	0
	사유	불법촬영물													
		허위영상물 등													
		아동청소년성착취물													
처리 결과	자체 삭제·접속차단														
	해당없음														
	방심위 심의요청	심의삭제·차단													
		해당없음													
		각하 등													
	소계		0	0	0	0	0	0	0	0	0	0	0	0	
	삭제·차단 사유	불법촬영물													
		허위영상물 등													
아동청소년성착취물															

※ 요청사유 및 삭제·차단 사유는 중복계상

4.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

○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관련 약관 및 정책

- 서비스 이용약관 : <https://friendscube.com/terms2.html>



○ 신고·삭제요청 처리 프로세스

불법촬영물 및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업무 처리 매뉴얼

작성일: 2021.1.12

작성자: 한민균

<불법촬영물 및 음란물 신고 처리 절차>

1. 고객센터에 접수된 불법촬영물, 음란물 등 신고 삭제요청을 확인후, 서비스개발팀에 전달한다.
2. 서비스개발팀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다.
3. 해당 게시자는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한다.
4.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안내한다.
5. 처리과정 및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한다.

* 내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,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

1.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(www.kocsc.or.kr) 접속
2. 조치의무사업자 전용 심의요청 메뉴 클릭
3. 디지털 성범죄 심의요청(조치의무사업자 전용)
4. 유통방지 책임자 등 관계자 개인 명의 신고
5. 민원인 정보 입력
6. 심의요청 정보 입력
7. 심의 결과에 따라 즉시 조치

* 게재제한 정보에 대한 이의제기

1. 내부 판단에 의한 경우, 제한 사유 안내
2.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과에 의한 경우, 심의 결과 안내

○ 기타 운영관련 사항

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운영 방침

작성일: 2021.2.9

작성자: 한민균

유통방지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한다.

- ①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 조치를 위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시스템이 항상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한다.
- ②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 조치의 운영·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, 관련 로그기록을 3년간 보관한다.
- ③ 신고기록목록을 작성하고, 불법촬영물 등 유통 신고서 및 처리결과에 관련된 문서를 3년간 보관한다.

5.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

구분	정	부
성명	김영민	한민균
부서	대표	서비스개발팀
직책	대표	팀장
지정일	2020.12.12.	2020.12.12.

6.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교육

구분	교육일	교육명	참석자	시간	교육기관
교육실시	2021-4-9	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제도 안내	김영민 대표 외 1명	1시간	자체교육
법정교육	2021-7-29	비밀리에 대한 과외 오르 오프라인 초대기 로즈 기교오프	한민균 팀장	2시간	방통위
법정교육	2021-10-4	비밀리에 대한 과외 오르 오프라인 초대기 로즈 기교오프	김영민 대표	2시간	방통위